

의안번호	2213860
의 퇴 인	이정헌의원
회 답 일	2026. 1. 15.
추계번호	25B584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의2(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1.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차량·부품 구매 및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자율주행 AI 학습센터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재량규정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제2항) 1.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을 것. 다만, 해당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2. 운행하려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을 것 3.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실적 또는 연구개발 실적을 제출할 것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3조의2(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 제23조의2)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보조금 지급조건 및 지급종류

구분	내용
보조금 지급조건	① 제작·조립·수입하려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을 받을 것. 다만,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운행하려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적합성 승인을 받을 것 ③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연구개발 실적을 제출할 것 * 각 조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지급
보조금 지급종류	①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차량·부품 구매 및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 ②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③ 자율주행 AI 학습센터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 개정안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자의 규모,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차량·부품 구매 및 개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사업 운영, 자율주행 AI 학습센터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함
-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보조금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또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향후 이를 충족할 기업 등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관련 소요 비용의 산정 방식, 보조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 방식	사업내용	2025	2026
자율자동차 상용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지자체 보조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 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에게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지원	• 국비: 2,000 • 지방비: 2,000	• 국비: 3,000 • 지방비: 3,000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도화	지자체 보조	세종·충북·대전을 연결하는 초광역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 추진	—	• 국비: 1,530 • 지방비: 1,020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자율주행 실증도시)	출연	자율주행차 대규모 실증을 위한 차량 구매·개조, 데이터 수집·가공, 관제시스템 구축·운영 등 지원	—	• 국비: 61,04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